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재난방지법시행령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피해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산불 및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산림재난피해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규정

나.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를 규정(안 제3조)

-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규정

라.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산림재난별 수립 기한 등을 규정

마.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할 사항을 정하고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바.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

아.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매년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며, 기상·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

자.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차. 산불 예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산불신고,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숲속의 집 등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도록 규정

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할 부분부장을 두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임기(2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서 발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등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

너.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 운영,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러.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산림청장이 발령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산불경보)의 발령 기준 및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머.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 기준 규정

버. 산불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과 이에 따른 산불 진화의 통합 지휘권 위임 등의 기준을 규정

서. 산불진화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 산불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규정

어.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단(1개단 10명 내외), 산불예방진화대(1개조 10명 내외)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1개조 12명 내외)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저.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처.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의 긴급점검 대상 시설과 긴급점검 실시·협조·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커.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시 발생하는 방제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규정

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 마련

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허.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1개단은 4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임무를 규정

고.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5명 내외)과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임명 및 임무,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 산불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 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로. 산사태등 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 구성·운영 및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 등을 규정

모.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복구계획 등을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내용을 규정

보.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 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인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 및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오.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절차와 해외 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규정

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초.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 기준 마련

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

토.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

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관계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호.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산림재난방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기관 또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 산불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행위제한, 명령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사태와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석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산림조합과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3조(적용 장소 및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림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기상자료 등 산림재난 방지에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을 산불·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산사태등 분야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

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토지 주변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재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대응 활동
2. 산림재난 정보 등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위험지역 파악 및 사전대피 등 능동적인 대처
3. 산지개발 시 대상지역의 재해위험도 및 예방시설 설치의 기초자료
4. 기타 산림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 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산불 예방 등)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2.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3.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병해충 방제
2. 학술연구조사
3.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 오토캠핑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른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을 말한다.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거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불경보의 조치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 산불위험지수
2. 대형산불위험예보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2. 중·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통합지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통합지휘 중에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

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2. 그 밖에 기상 여건,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산불확산예측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민간항공기 운전자
3.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재난대응,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항공기의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협조요청 대상은 법 제36조제1항의 기관을 말한다.

2. 협조요청 사항에는 목적·사유·요청 대상의 종류 및 수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장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조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에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2항의 임무
2.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
3.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4.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
5. 산불진화 교육·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1. 산사태등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산사태등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긴급점검의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결과 산사태등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산사태등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9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물량이 많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③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검경의뢰, 피해목 훈증·파쇄·소각 등 방제
2.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3.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4. 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5.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8.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산불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1.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5. 그 밖에 산불 예방·대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산불대응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산불대응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등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5조(산사태등 피해 조사) ① 산림청장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의 단장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의 단장은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산사태등 피해조사
- 2. 산사태등 복구계획 작성
-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사태등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복구계획과 토지사용 동의서를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복구에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분석·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과정의 문제점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과정의 효율성
3.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8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7.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한다.

제39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앞으로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산림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제40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1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2조(지도·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서류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피,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법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법 제69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제46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23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
4. 법 제28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지역에 대한 예찰, 방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인한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관한 권한
6.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인한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권한

5.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

③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점검에 관한 권한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5.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 시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및 통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에 관한 권한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권한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8.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망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창”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를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산림보호구역 관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9,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호 중 타목부터 러목까지 각각 삭제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

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45조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령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사태와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석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산림조합과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3조(적용 장소 및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림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기상자료 등 산림재난 방지에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을 산불·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산사태등 분야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토지 주변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재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대응 활동

2. 산림재난 정보 등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위험지역 파악 및 사전대피 등 능동적인 대처

3. 산지개발 시 대상지역의 재해위험도 및 예방시설 설치의 기초자료

4. 기타 산림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산불 예방 등)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2.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3.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림병해충 방제
2. 학술연구조사
3.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 오토캠핑장,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른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을 말한다.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 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 현지점검의 결과
 -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 4. 안전조치의 방법
 - 5. 안전조치의 기한
 -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불경보의 조치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 산불위험지수
2. 대형산불위험예보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2. 중·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통합지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통합지휘 중에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2. 그 밖에 기상 여건,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산불확산예측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민간항공기 운전자
 3.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재난대응,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항공기의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 ③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협조요청 대상은 법 제36조제1항의 기관을 말한다.
2. 협조요청 사항에는 목적·사유·요청 대상의 종류 및 수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장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조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조에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2항의 임무
2.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
3.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4.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
5. 산불진화 교육·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1. 산사태등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산사태등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긴급점검의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결과 산사태등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산사태등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9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

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물량이 많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③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검경의뢰, 피해목 훈증·파쇄·소각 등 방제
2.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3.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4. 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5.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8.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

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산불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1.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5. 그 밖에 산불 예방·대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산불대응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불대응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등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대응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5조(산사태등 피해 조사) ① 산림청장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의 단장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의 단장은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사태등 피해조사
2. 산사태등 복구계획 작성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사태등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복구계획과 토지사용 동의서를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복구에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분석·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과정의 문제점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과정의 효율성
3.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8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7.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한다.

제39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앞으로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산림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제40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1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2조(지도·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서류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피,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포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법 제71조제2항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제46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23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
4. 법 제28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지역에 대한 예찰, 방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인한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관한 권한
6.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인한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권한
5.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권한

③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점검에 관한 권한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5.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 시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및 통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에 관한 권한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권한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8.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망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를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망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산림보호구역 관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9,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호 중 타목부터 러목까지 각각 삭제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45조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산불경보 구분	발령기준
관심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 전국의 산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산불경보 구 분	소속 공무원·직원의 산불 발생 취약지역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조치기준
관 심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근무요원을 배치 또는 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역 에 감시인력 배치
주 의		○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예방진 화대 고정 배치 ○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
경 계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 또는 대기 ○ 소속 사회복지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 또는 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역 에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 기 허가 중지
심 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 또는 대기 ○ 소속 사회복지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 또는 대기	○ 민간·사회단체 및 산림재난방지유 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비고

-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직원의 산불 발생 취약지역 배치 규모는 기관별 산림 여건 및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 소속 공무원·직원의 비상대기는 사무실 대기 또는 재택 대기할 수 있으며, 사무실 대기 인원 및 대기 시간, 재택 대기 인원은 산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 경계·심각 단계 시, 공무원의 담당 지역 순찰·단속 활동은 주의 단계에서 담당 지역을 지정받은 공무원이 실시한다.

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초기 대응	확산 대응	
대응 단계	-	산불 1단계	산불 2단계
① 피해면적 (산불영향구역)	10ha 미만	10~100ha 미만	100ha 이상
② 기상상황 (평균풍속)	3m/s 미만	3~11m/s 미만	11m/s 이상
③ 진화시간 (예상시간)	5시간 미만	5~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④ 시설피해	피해 우려 없음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이상 피해 우려
⑤ 지휘권자	㉠ 시·군·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청장(대형산불 우려 등 필요시)		㉠ 시·도지사 ㉡ 산림청장(필요시)

1. 피해면적(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를 발령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이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확산 대응 산불 2단계까지)로 발령할 수 있다.

3. 위 1, 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산불발생 지역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전체를 합쳐도 20동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확산 대응 산불 2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4. 주택 등 주요시설이란 주택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된 국가 중요시설(국가유산, LNG, 원전 등)을 말한다.

5. 산불 대응 단계 기준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휘권자를 구분하되, 대형산불 우려 시에는 산불 대응 단계 기준에 상관없이 산림청장으로 지휘권을 전환할 수 있다.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발령기준	조치기준
관심	○ 산사태 빈발시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재난관리자원 정비 ○ 비상연락망정비 및 대피장소 점검·정비
주의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이상의 예측정보가 2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입산통제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 주민대피 명령
경계	○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주의보 이상의 예측정보가 35%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2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심각	○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5%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단, 세종특별자치시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발생하고 인접 시·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발생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 피해대책 마련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사태 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하고,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산사태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발령한다.
3. 산사태 예측정보는 1시간 후 예측정보와 실황정보를 적용한다.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3조제2항 관련)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보상종류	보 상 대 상	지 급 기 준
요양보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 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산림재난 대피지원,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보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 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산림재난 대피지원,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제보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 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산림재난 대피지원,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유족보상	○ 산불 예방·진화 작업, 인명 구조작업, 진화·교육훈련, 산림재난 대피지원,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등 급	보 상 금	등 급	보 상 금
제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법 제79조제2항제1호	50	100	200

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	20	100	200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79조제3항	20	40	70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2호	50	100	2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79조제4항제1호	10	20	30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법 제79조제4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3호	50	10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연 락 처	(042) 481 - 4279